

의안번호	2201671
의 퇴 인	권성동 의원
회 답 일	2024. 7. 22.
추계번호	24B1878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중요 통신장비 정보보호 인증제도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65억원(연평균 13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중요 통신장비 정보보호 인증제도 실시(안 제48조의7)	1,300	1,300	1,300	1,300	1,300	6,500	1,300

주: 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사 사례인 IoT 보안인증제도와 유사한 규모로 실시한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인증제도 운영에 따라 추계금액은 증감할 수 있음

2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8조의7 (중요 통신장비 에 대한 인증) 신설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장비에 대하여 정보보호 인증을 할 수 있음(제1항)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및 인증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함(제3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48조의7(중요 통신장비에 대한 인증) 신설	○	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중요 통신장비 정보보호 인증제도 실시(안 제48조의7)
-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제도를 실시할 경우 인증 절차 및 기준 개발, 인증기관 운영 등을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중요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과 관련한 현행 사업은 없음
 - 개정안과 유사한 사업으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법 제48조의6(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)¹⁾에 따라 2021년부터 IoT 보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2~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

1)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6(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험 결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증을 할 수 있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(이하 "정보보호인증"이라 한다)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- IoT 보안인증제도는 가전·교통·금융·스마트도시·의료·제조 및 생산·주택·통신 등 8대 분야의 기기·설비·장비²⁾를 대상으로 데이터보호, 암호, SW보안, 업데이트 등 총 50개 항목에 대해 인증시험을 실시하여, 보안 위험 등급을 3개 등급(라이트 베 이직, 스탠다드)으로 구분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에 인증제 도 운영을 위임 중 (참고자료 첨부)

[표 2] IoT 보안인증제도 운영 예산현황

(단위: 백만원)

	2021	2022	2023	2024
세부 내역	IoT 보안 시험·인증 595 IoT 보안인증제 기반 마련 200 IoT 보안인증 교육 운 영 50 IoT 보안 시험 절차 개발 250 IoT 보안내재화 기준 마련 200 IoT 제품 보안성 유지 확산 50	IoT 보안 시험·인증 595 컨설팅 및 교육 255 시험절차 및 기준개발 400 인증위원회 운영 50	IoT 보안 시험·인증 595 컨설팅 및 교육 255 시험절차 및 기준개발 400 인증위원회 운영 50	IoT 보안 시험·인증 595 컨설팅 및 교육 255 시험절차 및 기준개발 300 인증위원회 운영 50
계	1,300	1,300	1,300	1,200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- 개정안에서 정보보호 인증의 대상이 되는 중요 통신장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,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및 인증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인증 대상 통신장비와 인증 방법을 알 수 없으나, 유사 사례인 IoT 보안인증제도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중요 통신장비 정보보호 인증제도를 위임하여 IoT 보안인증제도와 유사한 규모로 실시한다고 가정

2)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6조의2(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)
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·설비·장비"란 별표 1의3에 따른 분야 중 어느 하
나의 분야에 속하는 기기·설비·장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기기·설비·장비(이하 "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"이라
한다)를 말한다.

1.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기기·설비·장비
2.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중대한 위험성을 가져오는
기기·설비·장비

하면, 중요 통신장비 정보보호 인증제도 실시를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65억원(연평균 13억원)으로 추정

[표 3] 중요 통신장비 정보보호 인증제도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중요 통신장비 정보보호 인증제도 실시 (안 제48조의7)	1,300	1,300	1,300	1,300	1,300	6,500	1,300

주: 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사 사례인 IoT 보안인증제도와 유사한 규모로 실시한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인증제도 운영에 따라 추계금액은 증감할 수 있음

2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사 사례인 IoT 보안인증제도와 유사한 규모로 실시한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인증제도 운영에 따라 추계금액은 증감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이유미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정보통신망 연결기기(IoT) 보안인증제도³⁾

□ 개요

-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물인터넷(IoT) 제품*·앱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 요구조건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의 사생활 보호 지원

* 도어락, 월패드, 화재감지기, 수도검침기, IoT플러그, 온도센서 등 소형 디바이스 기기 중심

< 관련 법제도 현황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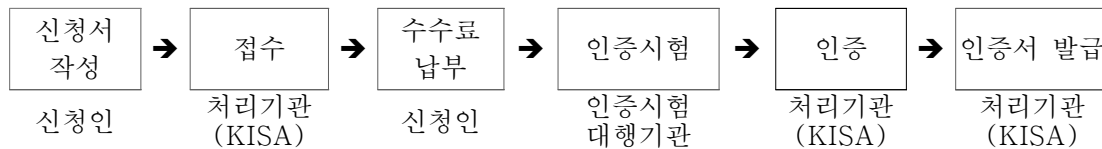
▲ 법적근거	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6(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)
▲ 인증대상	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2(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) 별표1의3
▲ 인증기준	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

□ 주요내용

- (인증대상) 가전·교통·금융·스마트도시·의료·제조 및 생산·주택·통신 등 8대 분야

※ 근거 :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2(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) 별표1의3

- (인증절차)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에서 인증제도를 운영하도록 위임



- (인증시험) 데이터보호, 암호, SW보안, 업데이트 등 총 50개 항목
- (유효기간) 3년 (2년 한도 내 연장 가능, 5년 경과 제품은 신규 신청)
- (인증유형) IoT 제품의 다양한 유형 및 인증 수요를 반영하고, 보안 위험 기반의 등급으로 개선하여 총 3개 등급(라이트, 베이직, 스탠다드)으로 구분

	요구되는 보안수준	예시
① 라이트	단순 해킹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 보안조치 수준	도어락
② 베이직	중요 정보의 불법적 접근 차단, 노출 방지에 대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보안조치 수준	월패드
③ 스탠다드	해킹 공격에 대응 및 국제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안조치 수준	스마트 가전

< IoT 보안인증 현황 >

연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4.5월	합계
합계	4	24	41	73	83	82	33	340

3)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